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지 적 재 조 사 에 관 한 특 별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되는 ‘사업지구’는 타법의 사업지구와 혼동할 우려가 있어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6812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에서 마련한 과태료 금액지침에 따라 법률상 상한액에 맞추어 최초부과금액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용어 변경(안 제4조제1항제2호 등)

법 제2조제3호 개정에 따라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변경
나.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제29조 별표)

별표 제2호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의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을 법제처 권고 내용과 같이 최초부과 금액을 법률상 상한액의 50%이상으로 변경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사업지구”를 각각 “지적재조사지구”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사업지구의 지정 등)”을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본문 및 제3항 중 “사업지구”를 각각 “지적재조사지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사업지구를 지정·고시하거나,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를 지정·고시하거나, 지적재조사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사업지구지정신청동의서”를 “지적재조사지구지정신청동의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사업지구의 경미한 변경)”을 “(지적재조사지구의 경미한 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한다.

제2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적재조사지구

별표 제2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5조제4항 또는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시경계점표지를 이전 또는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5조 제1항제1호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나. 법 제15조제4항 또는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경계점표지를 이전 또는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5조 제1항제1호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
다. 지적재조사사업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한 경우	법 제45조 제1항제2호	50만원	75만원	100만원

부 칙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측량·조사 대행에 관한 고시 등)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행자(이하 “지적측량수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조사 등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측량·조사 대행에 관한 고시 등) ①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사업지구</u> 의 명칭	2. <u>지적재조사지구</u> -----
3. <u>사업지구</u> 의 위치 및 면적	3. <u>지적재조사지구</u>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5조(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 ----- ----- -----.
1. <u>사업지구</u> 의 현황	1. <u>지적재조사지구</u> -----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u>사업지구</u> 의 지정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u>사업지구</u> 지정 신청을 받은 특별시장·광역	제6조(<u>지적재조사지구</u> 의 지정 등) ① ----- <u>지적재조사지</u> <u>구</u> -----

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및 「지방자치
법」 제175조에 따른 대도시로
서 구를 둔 시의 시장(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은 15일 이내
에 그 신청을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이하 "시·도 위원회"라 한다)
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회부받은 시·도 위원회
는 그 신청을 회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지구의 지정
여부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여
야 한다. 다만, 사실 확인이 필
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심의기간을 해
당 시·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
쳐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시·도 위원회는 사업지구
지정 신청에 대하여 의결을 하
였을 때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

② ----- 지적재조사지구

----- 지적재조사지구-----

-----.

③ ----- 지적재조사
지구 -----

-----.

④ -----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8조에 따라 사업지구를 지정·고시하거나, 사업지구를 지정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사업지구를 변경할 때에도 적용한다.

제7조(토지소유자 수 및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 ① (생략)

② 토지소유자가 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동의하거나 그 동의를 철회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지구 지정신청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⑤ 지적소관청은 사업지구 지정 신청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에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 지적재조사
지구를 지정·고시하거나, 지적
재조사지구-----

-----.

⑤ -----
-- 지적재조사지구-----
-----.

제7조(토지소유자 수 및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지적재조
사지구 지정신청동의서 -----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지적재조사지
구 -----

--. -----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
제8조(사업지구의 경미한 변경) 법 제7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u>사업지구</u> 명칭의 변경 2. 3. (생략)	제8조(지적재조사지구의 경미한 변경) ----- ----- ----- -----. 1. <u>지적재조사지구</u> ----- 2. 3. (현행과 같음)
제15조(사업완료의 공고)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업완료 공고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u>사업지구의</u> 명칭 2. (생략) ② (생략)	제15조(사업완료의 공고) ① ---- ----- ----- ----- -----. 1. <u>지적재조사지구</u>-----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공개시스템 입력 정보) 시·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은 법 제38조에 따라 토지소유자등이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실시간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생략)	제28조(공개시스템 입력 정보) -- ----- ----- ----- ----- ----- -----. 1. (현행과 같음)

<u>2. 사업지구</u> 2의2. ~ 10. (생 략)	<u>2. 지적재조사지구</u> 2의2. ~ 10.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사업총괄과	
연 락 처	(044) 201 - 4660